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를 시행한 개발사업장에 대해 착공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05호, '21.4.20. 공포 및 '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이행 의무의 승계에 따른 제출사항 명시(안 제1조의6)

- 1) 이행 의무 승계 시 협의 내용, 이행상황, 승계 일시·사유 등 제출서류 규정을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1조의7)

- 1) 착공 전 준비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물 철거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가능한 공사를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방법 신설(안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 1) 방재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대행자 등록증, 상속 증명서류 등을 명시하고, 신고 서식을 신설

라. 방재신기술 심사 수수료 및 지정서 등 정비(안 별표3 및 별지 제11호 서식, 제12호서식)

- 1)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여 방재
신기술 수수료 정비
 - 2) 방재신기술 지정서 등에 재난안전산업 브랜드 이미지 추가
- 마. 상습설해지역 현황관리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 1)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관리 시 염화칼슘 및 적설량 표기 단위 개정
- 바. 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31조)
-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협약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약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약의 내용 이행주체 등

제1조의7(협약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후 공사의 범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제26조 관련)

1. 평가심사비

내 용		금 액(건당)
방재신기술 <u>지정</u>	<u>1차 심사</u>	<u>1백만원</u>
	<u>현장조사</u>	<u>실비</u>
	<u>2차 심사</u>	<u>1백만원</u>
<u>방재신기술</u>	<u>현장조사</u>	<u>실비</u>
<u>보호기간 연장</u>	<u>종합심사</u>	<u>1백만원</u>
방재기술 검증		2백만원

2. 현장평가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자와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비고

1. 현장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2. 현장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

① 관리 번호	② 위치	고립 예상지역				교통 두절 예상지역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적설량 (cm)	
		주민 (가구/명)	구조대책		취사 구호 세트	③ 도로명	두절 시 작 지점 ~ 끝 지 점	총길이 (km)	모래보관장 (개소)	염화 칼슘 (톤)	제설 장비 (대)	비닐 하우스 (동/ha)	인삼 재배시설 (동/ha)	축사 시설 (동/ha)	기타	평년	금년
			장비 (대)	구조대원 (명)													

주)

① 관리번호란에는 시·군·구 기관의 일련번호(예: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13-01-00)를 적습니다.

② 위치란에는 행정단위 또는 자연마을명 등 지역명을 적습니다.

③ 도로명란에는 고속국도 10호, 국도 5호, 지방도 100호 등 등급 및 노선번호를 적고, 비법정도로는 “지역명”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

(앞쪽)

관리번호										
위 치										
현황	고립 예상지역	가구/명		구조대책			취사 구호세트			
				장비(대)	구조요원(명)					
	교통 두절 예상지역	도로명	두절 시작 지점 ~ 끝 지점	총길이 (km)	모래보관장 (개소)	염화칼슘 (톤)	제설장비 (대)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비닐하우스 (동/ha)		인삼재배시설 (동/ha)		축사시설 (동/ha)	기타			
	적설량	평년	cm		금년	cm				
	<관리 현황> ○ 관 리 청: ○ 지정 사유: ○ 해제 사유: ○ 지 정 일: ○ 해 제 일: ○ 과거 피해: ○ 추진 현황: ○ 관리공무원: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유선: 무선: ○ 관리주민: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유선: 무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승계를 하는 대행자	등록번호 제 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E-mail	
승계를 받는 대행자	상 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E-mail	
승계사유	[] 상속	[] 양도·양수	[] 분할·합병
승계사유 발생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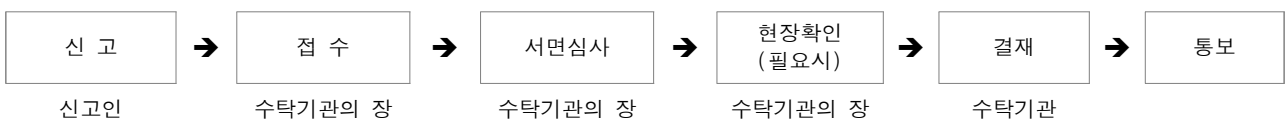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방재신기술 지정서

기술명		
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		
보호기간		
기타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방재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제 호

방재기술 검증서

기술명			
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검증 내용	기술 개요		
	검증 결과		
	검증 시의 조건		
	유효기간		
	기타		

※ 상세한 평가 내용은 방재기술 검증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의6(협약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협약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u> <u>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u> <u>3. 협약의 내용 이행주체 등</u>
<u><신 설></u>	<u>제1조의7(협약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u> <u>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u> <u>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u> <u>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u>

<신 설>

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
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
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
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전
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의 협의 요청 후 공사의 범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
의 승계 신고) 법 제40조의2제1
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